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일상감사 불철저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감사실에서는 SH공사 「일상감사 시행내규」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을 [표 1]과 같이 ‘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고,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4,045개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이 3,362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별 실시현황

연번	일상감사 대상업무	계		2015		2016		2017		2018. 4.	
		실시 건수	의견 제시	실시 건수	의견 제시						
	계	4,045	310	1,183	147	1,245	87	1,224	59	393	17
1	주요사업과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525	92	177	49	156	28	153	14	39	1
2	안전에 관한 사항	7	2	1	1	1	0	4	1	1	0
3	계약에 관한 사항	3,362	178	969	82	1,040	50	1,013	33	340	13
4	예산·회계·결산·자금에 관한 사항	44	8	15	6	14	1	12	1	3	0
5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60	18	11	5	21	5	22	7	6	0
6	인사에 관한 사항	47	12	10	4	13	3	20	3	4	2

한편 SH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는 ‘지방공사’에 해당되며, 지방공사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SH공사 「일상감사 시행내규」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내규 제8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할 때는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에 관한 사업을 일상감사 할 때는 지방계약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위 기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적시하여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에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일상감사한 3천만원 초과 계약 사업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데도 시정·보완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게 발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담당자의 계약 관련 규정 미숙지와 지방계약법령 등의 교육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입찰참가자격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 발주된 사업

연번	사업연도	사업명	관련 규정 저촉사항	비고
1	2015	㉠㉠관리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실적(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특별한 사정없이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함	
2	2016	2016년도 ㉠㉠관리용역		
3	2016	2016년도 ㉠㉠관리용역		
4	2015	㉠㉠관리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실적(규모·양)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목적물 규모·양의 1/3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특별한 사정없이 해당 계약목적물 규모(양)의 1/3을 초과하여 제한함	
5	2016	2016년 ㉠㉠ 감리용역		

연번	사업연도	사업명	관련 규정 저촉사항	비고		
6	2015	■□산정에 관한 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기준을 정하지 않음			
7	2015	** 제작 및 송출용역				
8	2016	@@조사 용역				
9	2016	2016년 \$\$ 실태조사 용역				
10	2016	2016년 %% 실태조사				
11	2016	2016년 #조사 용역				
12	2016	2016년 ##조사 용역				
13	2016	2016년 ###조사 용역				
14	2016	2016년 ####조사 용역				
15	2016	2016년 #####조사 용역				
16	2016	2016년 #####조사 용역				
17	2016	2016년 #####조사 용역				
18	2016	&&수립 용역				
19	2016	2016년도 ++수립 용역				
20	2017	=방안 수립용역				
21	2015	??방안 연구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한 인정하고 민자·민간 또는 해외실적을 불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민간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22	2015	2015년 << 대행용역				
23	2016	2016년도 >>계획 수립용역				
24	2016	2016년 ∞사업 운영용역				
25	2017	○○계획 수립용역				
26	2017	2017년 ★★사업 운영용역				
27	2015	◇◇산정에 관한 용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입찰에 부치면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28	2015	2015년 ♣♣ 제작용역				
29	2015	☆☆ 제작 및 송출용역				
30	2015	◆◆방안 연구용역				
31	2015	◆◆평가				
32	2016	2016년도 ⊕⊕계획 수립용역				
33	2018	2018년 ■■ 제작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2.1억원 이상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만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제한이 가능한데도 - 추정가격 2.1억원 미만인 용역을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함			
34	2018	2018년도 ⊕⊕ 운영용역				
35	2015	△△관리 및 위탁운영 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 의서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 사업자등록 등)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 해야 하는데도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요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공고일로 정함			
36	2015	2015년 ■■ 정리용역				
37	2015	□□ 방안 수립용역				
38	2016	2016년 ■■■컨설팅				
39	2016	■■■전략 수립용역				
40	2016	▲▲ 활성화 용역				
41	2017	2017년도 ▲▲ 운영 용역				
42	2017	◆◆ 제작설치 용역				

연번	사업연도	사업명	관련 규정 저촉사항	비고
43	2017	2017년도 ●● 제작 용역		
44	2017	●●방안 수립용역		
45	2018	●●전략 수립용역		
46	2017	△△아파트 건설공사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 해야 하는데도 -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공고일로 정함	
47	2015	△△사업 검토 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이 만료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도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공고일로 정함	
48	2015	▷▷조사 용역		
49	2015	▽▽ 분석용역		
50	2015	△△ 실행 전략수립 용역		
51	2015	2015년 ▷▷ 조사 용역		
52	2015	△△진단 용역		
53	2015	2015년도 ◁◁ 제작 용역		
54	2015	2015년 ∪∪ 정리용역		
55	2015	∩∩ 사업참여 방안 수립용역		
56	2015	∩∩ 관리용역		
57	2015	∩∩ 인식조사 용역		
58	2016	서울시 ∩∩조사 용역		
59	2016	2016년 <<< 조사 용역		
60	2016	2016년 >>> 조사 용역		
61	2016	2016년 ∅∅ 실태조사 용역		
62	2016	2016년 ∅∅∅ 실태조사 용역		
63	2016	2016년 ∅∅∅∅ 실태조사 용역		
64	2016	2016년 ∅∅∅∅∅ 실태조사 용역		
65	2016	2016년 ∩∩ 실태조사 용역		
66	2016	2016년 ∩∩∩ 실태조사 용역		
67	2016	2016년 ∩∩∩∩ 실태조사 용역		
68	2016	2016년 ∩∩∩∩∩ 실태조사 용역		
69	2016	∩∩계획안 제안용역		
70	2016	∩∩전략 수립용역		
71	2017	2017년도 ∩∩ 운영용역		
72	2017	∩∩계획 수립용역		
73	2017	2017년 <<<사업 운영용역		
74	2017	∩∩행사 운영용역		
75	2017	∩∩전략 수립용역		
76	2017	∩∩ 분석용역		

연번	사업연도	사업명	관련 규정 저촉사항	비고		
77	2017	ⓂⓂ계획 수립용역				
78	2017	ⓂⓂ 구축용역				
79	2017	2017년도 ⓂⓂ 제작용역				
80	2017	2017년 ⓂⓂ 조사용역				
81	2017	ⓂⓂ 수립용역				
82	2017	ⓂⓂ 유지보수 용역				
83	2018	2018년 ⓂⓂ제작용역				
84	2018	ⓂⓂ 사업실행전략 수립용역				
85	2015	ⓂⓂ 건설사업관리 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명시하지 않음	
86	2015	ⓂⓂ 건설사업관리 용역				
87	2016	ⓂⓂ 건설사업관리 용역				
88	2016	ⓂⓂ 건설사업관리 용역				
89	2016	ⓂⓂ 건설사업관리 용역				
90	2016	ⓂⓂ 건설사업관리 용역				
91	2016	ⓂⓂ 건설사업관리 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정하지 않고 10% 이상 또는 20% 이상 또는 30% 이상으로 정함			
92	2015	ⓂⓂ 방안 수립용역				
93	2015	ⓂⓂ 건설사업관리 용역				
94	2016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95	2016	ⓂⓂ전략 수립용역				
96	2016	ⓂⓂ지침 연구용역				
97	2017	ⓂⓂ계획 수립용역				
98	2017	ⓂⓂ 사업				
99	2017	ⓂⓂ시스템 구축용역				
100	2017	ⓂⓂ시스템 구축용역				
101	2015	ⓂⓂ 건설사업관리 용역				
102	2016	ⓂⓂ 활성화전략 수립용역				
103	2018	ⓂⓂ 실행전략 수립용역				
104	2018	ⓂⓂ 정책방안 연구용역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데도 시정·보완하도록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감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